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탈세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박성배*
배원용**

<요 약>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의 조세포탈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방지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국세청 발행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실무의 관점에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자의 실무경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적인 측면의 조세포탈 방지방안으로서 먼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필요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규정을 부가가치세법상 본법에 두어 공제율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재활용폐자원에 공제는 그 대상사업자와 자원종류를 대폭확대 해야겠다. 또한 최종소비자 단계의 세부담완화를 위하여 납세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공제비율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매입세액 불공제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접대비와 소형승용차 구입 및 그 유지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의 방안으로 사업자등록카드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겠고, 부가가치세법 포탈에 대한 제재규정을 현실성 있는 처벌규정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법의 어려운 규정들을 모든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조세행정적인 측면의 조세포탈 방지방안으로서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을 기하여 조세저항과 세무관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며, 또한 과세관청의 각 납세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세무서의 조직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식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산서 발행에 대한 엄격한 과세관청의 규제조치, 내부시설에 대한 개업초기의 세원관리, 세무서별 또는 지방국세청 단위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각 사업자의 재산증식에 대한 사후관리의 검증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위장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한계점이 있어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부가가치세 포탈실태와 그 방지방안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국세청의 자료와 연구자의 실무경험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전반에 대한 분석이 미흡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또는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탈세, 부가가치세 탈세현황, 부가가치세 탈세방지 대책

---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sbpark@kyungwon.ac.kr, 031-750-5217, 주저자
** 공인회계사

논문접수일 : 2004년 4월, 게재확정일 : 2004년 5월

I. 서 론

1977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 제도는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으로 탈세행위가 빈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탈세행위에 따른 세무행정상 규제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노출되어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못함으로서 막대한 조세수입을 일실 하였고, 국민들간의 불신을 조장한 감이 있어서 과세형평주의 달성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선행세목으로서 매우 중요한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탈루 한다는 것은 세수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단순히 세금을 중간에서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면 이는 사업자가 국고금을 횡령한 것과 같은 것이어서 그 심각성은 더 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세제와 세정이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갖는 본래의 기능과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자진신고납부와 근거과세의 정착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탈세가 만연하게 된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다(함영복, 2001).

특히 우리 나라 납세자들은 윤리적·도덕적 관념보다는 경제적 관념을 앞세워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대가와 관계없는 일방적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탈세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범관, 1998).

우리 나라의 조세포탈액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과거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집단이 추정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NP대비 최저 7%내지 최고 47%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세포탈도 추정되어 매우 심각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규섭, 2002).

따라서 조세포탈의 가장 중심선상에 서있는 부가가치세제 및 세무행정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들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조세포탈의 규모나 실태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조세포탈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본적인 요인들을 개괄적으로 넓은 범위 내에서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탈세요인과 동기 등에 대한 분석을 일부 연구에서 제시하여 주고 있지만 그에 대한 법령의 문제와 더불어 국내 상거래상의 문제점을 무시한 일반보편성의 선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의 조세포탈실태 및 조세포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제도 및 세무행정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탈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탈세의 개념

조세청구권의 실현을 저지하기 위한 탈세는 과세요건의 충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라마다 일치하고 있으나 탈세의 객관적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차이기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고서의 미제출 등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행위와 계산서의 부정신고, 가공비용의 손금산입, 비용의 부당공제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탈세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탈세가 조세범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구성요소로서 악의, 고의, 조세포탈의도(intent to evade tax)를 필요로 하며, 의도적이지 않는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고의에 의해 특정 형태의 포탈을 하는 경우 조세포탈(tax evasion)과 구분하여 특히 조세사기(tax fraud)라고도 한다.

탈세를 비합법적인 조세회피라고 볼 때 이를 노골적 탈세(overt tax evasion)와 은폐적인 탈세(covert tax evasion)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는 공무원과 결탁에 의해 자행되며 장부의 위장기재, 거래사실 등의 인멸 등 모두 불법적인 특성을 지닌다(이필우, 1997).

우리 나라의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조세포탈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요건 충족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례에서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하여 적극적 행위만을 탈세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대법 81도 154, 대법 81도 532).

조세포탈의 예로는 장부의 허위기재, 이중장부의 작성·비치, 차명예금계정의 설정, 자산의 부외처리 등과 같은 소득을 은폐하는 부정수단을 써서 그 결과 과소 소득으로 허위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들 수 있다(이태로 등, 1991). 그리고 조세포탈범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침해하여 조세포탈을 발생케 한다는 인식과 용인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는 포탈행위, 즉 단순무신고, 과소 신고·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의 행정벌에 그치고 있다.

2. 조세포탈의 실태

현행세법에서는 대부분의 세목에 있어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 스스로 올바른 조세의식을 갖지 못할 경우 수많은 조세포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탈세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탈세의 실태나 그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기관인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국세통계연보(2003. 12)에 의하면 2002년 기준 부가가치세 총과세인원 3,963,454명에서 연간 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의 집단인 간이과세자가 무려 1,843,894명으로 약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이들의 1인당 평균 과세표준이 14,702,690원 정도로서 월매출액이 불과 1,225,224원에 불과함을 볼 때 조세포탈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둘째, 다음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탈세제보가 급격히 증가되다가 2001부터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처리건수에 있어서 1999년에 비하여 2000년의 경우에는 직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추징세액 역시 2000년에는 직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2002년, 2001년에는 2000년에 비하여 처리건수나 추징세액이 둔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요인은 최근 조세 포탈자에 대한 탈세 제보시 탈세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시행의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매우 우려되는 점은 2001년도의 총처리 건수 7,028건 중 무려 4,671건이 불문처리 된 것에서 보듯이 제보가 무고한 성실사업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탈세제보자료 처리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표 2-1〉 연도별 탈세제보자료 처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① 처 리 건 수		906	999	1,800	3,286	6,604	7,028	7,084
② 불 문		423	444	787	1,625	3,692	4,671	3,532
과세 활용	③ 건 수	483	555	1,013	1,661	2,912	2,357	3,552
	④ 추징세액	96,372	68,657	110,505	139,131	258,610	277,872	264,645
과세활용건수비율 ③/①		53.3	55.6	56.3	50.5	44.1	33.5	50.1
건당평균세액 ④/③		199.0	123.7	109.0	83.7	88.8	117.9	74.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12. 및 2003. 12. p.400

〈표 2-2〉 조세범칙 조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		① 법 인	6	16	49	57	66	94	49
		② 개 인	14	13	34	64	36	36	66
		③ 합 계	20	29	83	121	102	130	115
추징 세액		① 법 인	22,475	33,048	116,618	155,151	327,720	368,471	110,584
		② 개 인	7,686	3,741	21,357	53,834	11,068	38,693	25,955
		③ 합 계	30	36,789	137,975	208,975	338,788	407,164	136,539
건 당 추 징 세 액			1,508	1,268	1,662	1,727	3,321	3,132	1,187
처분 유형		① 통고처분	.	.	12	21	8	17	8
		② 직 고 발	20	28	69	95	92	102	95
		③ 무 혐 의	.	1	2	5	2	11	12
		④ 합 계	20	29	83	121	102	130	115
비 율	인원	법인 ①/③	30	55.1	59	47.1	64.7	72.3	42.6
		개인 ②/③	70	44.9	41	52.9	35.3	27.7	57.4
	추징 세액	법인 ①/③	74.5	89.8	84.5	74.2	96.7	90.5	81.0
		개인 ②/③	25.5	10.2	15.5	25.8	3.3	9.5	19.0
	처분 유형	통고처분 ①/④	.	.	14.5	17.3	7.8	13.1	7.0
		직고발 ②/④	100	96.5	83.1	78.6	90.1	78.5	82.6
		무혐의 ③/④	.	3.5	2.4	4.1	2.1	8.4	10.4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2. 12. 및 2003. 12 p.401

셋째, 다음의 <표 2-2>에서 보듯이 조세범칙 조사건수가 1996년에 비하여 2001년도에는 무려 6.5배 수준에 이르러 해를 거듭할수록 조세범칙 조사건수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조사 1건당 추징세액에 있어서도 1996년도에 1,508백만원이던 것이 2001년에 들어서는 3,132백만원으로 무려 2배이상 증가했음을 볼 때 조세포탈 규모가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사건수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추징세액은 무려 66.5%나 감소하고 있어 조세범처벌강화와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확대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III.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 탈세실태 및 요인분석

1. 부가가치세의 탈세실태

가. 부가가치세 탈세현황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포탈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지하경제의 규모는 그 추정기관 또는 연구자 및 분석방법에 따라 그 규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따라 GNP 대비 적게는 7%에서 많게는 4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신뢰도에 의문이 가지만 그 추정에 의한 수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이규섭, 2002).

유일호(1998)는 지하경제규모와 연계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한 바 있는데 총 부가가치세 대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1993년 9.8%, 1994년 6.7%로 추정한 바 있으며, 납세자의 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비율의 경우 1993년 2기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92.3%, 개인 일반사업자 67.1%, 과세특례자 35.2%로 추정되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현실화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액 대비 법인사업자 6.68%, 개인일반사업자 9.32%, 과세특례자 1.66%로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표현실화비율은 높지만 거래규모가 큼으로 인하여 탈루세액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과표현실화 비율이 낮은 과세특례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 탈루세액비율도 낮은 것은 거래규모나 세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유일호, 1998).

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현황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세무조사는 당해 세법의 조세실체법 규정과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국가와 납세자간의 조세채권 및 채무액을 확정하거나 확정된 조세채권 및 채무를 검증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하는 일련의 공권적 절차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경정조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경정조사를 과세표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인 일반조사와 세금의 탈루액 규모가 크다고 인정된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조사, 그리고 세금계산서 문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및 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는 자료상에 대한 자료상 조사 등으로 나누고 있다.

둘째, 조세범칙조사는 국가재정권의 침해 상태가 심각하고 탈세액이 고액이거나 그 수법이 지나치게 의도적이어서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닌 특수한 경우의 조사를 말하며, 이 조사는 사법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만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으며 통상 세무사찰이라고도 부른다(함영복, 2001).

그러면 우리 나라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2002. 12)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국세통계연보(2002. 12)에 의하면 선별경정의 경우, 1996년 306,033백 만원, 1997년 258,948백 만원, 1998년 242,847백 만원, 1999년 324,343백 만원, 2000년 426,368백 만원 및 2001년 674,410백 만원으로 부가가치세의 탈루액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매년 전사업자의 약 0.3% 정도 밖에 조사를 못한 것은 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증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범칙조사는 전 세목의 전체를 조사하는 통합조사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연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국세통계연보(2002. 12 및 2003.12)에서 살펴보면 연도별로 최근에 이를수록 조세범칙조사의 건수 및 추징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직고발의 경우에도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96년의 경우 조세범칙조사 20건에 30,161백 만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그 후 6년 뒤인 2001년에는 조사건수 130건에 추징세액 407,164백 만원으로 건수증가율 650%, 추징세액 증가율 1,350%로서 파악되고 있어서 탈세의 규모가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건수는 115건으로 12%감소하고 추징세액은

136,539백만원으로 34%감소하고 있어 개선의 기미가 보인다.

2. 부가가치세 탈세요인분석

가. 탈세요인의 구분

부가가치세 탈세요인분석을 위하여 이미 앞에서 탈세 실태 및 부가가치세 탈세현황을 국세청 등의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세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사업자가 조세제도적인 미비점을 이용하여 간이과세자에 머물고 있어서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탈세제보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불문처리됨으로써 조세행정적 측면의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무당국의 조세범칙 조사결과 파악된 추징세액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가가치세 탈세현황을 보면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나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의 현실화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포탈의 정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일반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나 사업자 증가 및 공무원수의 제한으로 세무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어서 조세행정적 측면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조세범칙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포탈은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의 실태분석결과 부가가치세의 탈세 요인으로는 크게 조세제도적 측면과 조세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조세제도적인 측면

(1) 간이과세제도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의 과세유형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다가 1995년 12월 29일 세법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중간적 위치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사업[1]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상 1억5천 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1999년 12월 28일 도입시점부터 개정시까지 존속하던 과세특례제도를 과감히 없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면에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자[2]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유형간의 세부담의 불균형에서 문제점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각 업종별로 일률적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업종간 실질적인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업종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매업 등 부가가치율이 20%인 업종의 경우 세부담율이 약 364%, 부동산임대업등 부가가치율이 30%인 업종의 경우 세부담율이 약 250%, 음식등 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의 경우 세부담율이 약 200%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함영복, 2001)을 볼 때 이러한 세액부담의 차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

둘째, 매출과표의 현실화의 기피로 인한 과세자료인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기피현상 및 신용카드발행기피현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다. 국세통계연보(2001.12)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계산서 수취비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사업자의 67.86%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큰 차이의 원인은 바로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간이과세자의 매출 과세표준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셋째, 과세표준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세유형전환 기피현상에 대한 문제점이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및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

1) 간이과세자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다.(구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1. 광업 2. 제조업 (단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3. 도매업(소매와 겸영포함), 4.부동산매매업

2) 현행 간이과세 적용배제규정은 제외업종 외에도 규모,지역등을 감안하여 배제대상을 고시하고 있으며 2005.1.1.이후부터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이를 매입세액으로 의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3항)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부가세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 제1항)이 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현행법 규정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수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웅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관청에서는 최근 면세 재화 중에서도 1차 가공을 거친 농수산물 등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공제하도록 해석하여 그 외의 면세재화를 공급받음으로 인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한 사례가 있다(이규섭 2002).

음식사업자의 경우 명세재화 등을 매입하여 음식물 등을 만들어 과세용역으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면세 농.수산물 등을 매입 시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의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특히 야채 등은 소규모 영세상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산서 등을 발행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며 이로 인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여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에서 사업자간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비사업자로 부터의 취득은 제외되고 (실제는 이들로부터의 수집이 많음) 극히 제한된 사업자만이 특정한 재활용자원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3,4항)하고 있어 실제로 재활용자원을 재생.생산.가공하는 많은 사업자는 매입재료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기현상으로 부가가치세 유통경로가 왜곡.단절되고 있다.

(3) 신용카드세액 공제제도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3]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함)를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에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및 조특법에 의한 현금영수증매출분(현금영수증은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그러나 공제대상자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규정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서 당연히 법인사업자를 포함하여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과세당국의 신용카드사용 권장정책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발행액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부가가치세수가 2000년 의 경우 무려 3조원이 초과하는 정도로 증가를 가져 왔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증가에 따른 과세표준의 양성화로 인한 조세 부담의 증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타인명의의 위장가맹점 또는 소위 카드깡 이라는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한 카드 과사용으로 인한 개인파산,범죄유발, 자살 등과 같은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4) 매입세액 불공제제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이며, 매출세액에서 거래 전 단계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경우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 상기 두 가지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점이 있다.

첫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그 유지의 경우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최근 자동차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가 말해 주듯이 차량의 구입은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형승용차의 영업에 사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필수적인 사업수단이고, 또한 사업자가 소형승용차를 매입한 시점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추후 매각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국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조세법에서는 접대비와 관련한 규정을 점차 축소시켜 가고 있으며 장차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의 사용을 근절하려는 추세에 있으나 접대비 또한 분명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접대비와 관련한 매입세액도 당연히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5) 세금계산서 제도

현행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액을 계산해 내는 데에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거래 증빙은 물론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증명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세금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제도는 동시에 거래금액의 노출로 인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양성화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국세기본법 상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회피정도가 높다는 점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제도는 신고납부에 의해 과세표준이 확정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하는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액이 적을수록 과세표준은 적어지고,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을 회피할 수 있음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들이 낮은 조세의식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로 인한여 소매업자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등은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를 발행할 수 없어(수취거절 및 매입부가세 부담회피)매출과 무관한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싶어도 거래상대방이 교부를 거부했을 때 선의의 거래자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전혀 조세법상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요인은 자격미달자(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 등)에 의한 공급과 조세회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미교부 하는자(수취않은자. 불법거래자 및 지하경제분)의 공급으로 대별해 볼수 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들로부터 채화나 용역을 거래해야 하나 그 일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할시 발생하는 매입없는 매출만 발생하게 된다.

셋째, 부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재화나 용역 등 실물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받아 가로채는 행위를 소위 자료상이라 하는데 자료상에 대한 처벌정도가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량 등에 의하고 있음으로 해서 근절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독하는 과세관청에서도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깊이 있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6) 가산세 및 처벌

납세자의 납세의무 불성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가산금, 가산세,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 등이 있는데 이중 가산세와 조세범처벌은 납세의무 불성실에 대한 처벌성격을 갖는다. 납세의무 불성실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세무조사라고 할 때, 그 예방적 성격을 가진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의 구조와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을 명백히 적발하여 조세를 추징한다 하여도 처벌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조세포탈을 한 범법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포탈불감증을 만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한 합리적인 처벌제도가 마련됨과 동시에 실질적·직접적으로 현실을 적용하는 세무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잘못 설정된 불성실납세자의 처벌구조는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포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케 되어 탈세의 관습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손광락, 1998).

현실적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 즉, 과세관청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조세포탈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판단되며 납세자들이 조세 포탈액이 적발 될 때 가산세만 적용하여 납부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갖게되어 조세포탈에 대한 불감증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가산세제도는 조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형벌단계 이전에 부과되는 행정벌 성격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과소신고시에는 과소신고세액의 10%, 무납부시에는 무납부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이자율 3/10,000(년10.95%)에 상당하는 세액 수준으로 부과된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각 국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가산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다[4)]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세범의 처벌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과세관청에서 처벌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국민들의 탈세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세범죄에 속하는 정도의 포탈범들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 하였을 경우 이들 모두가 범법자가 될 것이고, 세액의 몇 배가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수많은 납세자가 도산에 빠질 것을 염려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세액의

---

4) 영국의 경우 부정적 행위에 의한 과소 신고의 경우 세액의 10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과소신고가 악의에 의한 경우 세액의 40%, 허위에 의한 경우 세액의 8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4배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매우 높은율을 적용하고 있다(이규섭2002)

추징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조사대상자수에 비하여 고발자수가 적은 이유이며 조세범으로 처벌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최명근, 1995).

(7) 난해한 조세법 규정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본법 36개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 사회에서처럼 복잡한 과세거래 등을 불과 36개 조항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예규 등을 사례별로 규정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문귀 또는 용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세와 면세의 구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규에 대한 내용들을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 조세행정적인 측면

(1) 세무조사

세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조세포탈 심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집행에 있어서 공정한 조사대상자 선정 등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세무조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가 외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외형 위주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으로 인하여 소위 과세표준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그 장소에서 같은 업소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소위 사업자들 사이에서 말하는 모자바꿔쓰기라는 신종어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 왔다.

따라서 공평과세의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외형 위주가 아닌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다.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부가가치율 및 과세표준신장율 만이 아닌 당해 업체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하여 부실혐의가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무관서별 조사대상자 선정성 문제점이 있다. 업종이 많이 몰려있는 세무관서 관할업체의 경우 조사 받을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 선정이 각 세무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을 최소한 지방청 단위로 선정하여 세무서별로 배분하는 형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과세유형 분류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과거의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이었다. 다행히도 2000년7월 1일부터 과세특례제도가 없어지고 간이과세제도만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시행에 있어 문제점은 대단히 큰 것이라 할수 있다. 도시지역의 4인가족 평균최저생계비를 계산해 볼 때 도시지역내의 간이과세자는 계산상 전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말 현재 간이과세자가 차지하고 하고 있는 비중이 서울의 경우 전체사업자의 약 38.28%이며, 전국적으로도 전체사업자의 약 46.52%에 이르는 것을 보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재화의 이동 및 용역의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그만큼 과세자료발생의 취약점으로 자리잡게 되어 근거과세의 기반이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2) 불완전한 세원관리

현 국세청의 조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관리를 세원관리과와 조사과에서 나누어 맡고 있다. 세원관리과의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각종 신고자료의 처리 및 과세자료의 처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조사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세무부조리의 근절을 위하여 지역 담당제를 폐지함으로써 종사공무원과 납세자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양자간의 결탁에 의한 조세부정의 근절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 기능별 조직형태를 가동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는 과거보다도 더 힘들게 되었다. 종사직원 1인당 담당업체수가 이 제도의 시행 전 788개 업체인데 비하여 시행후의 업체수가 2,123개 업체에 이르러 1인당 담당업체 증가비율이 무려 269.42%나 증가하였음을 볼 때 효과적인 세원관리가 매우 불가능하며, 실제 근무자들의 여론도 그러하다(이규섭, 2002). 또한 국세업무에 종사하고있는 공무원들의 경력이 최근 들어 급격히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2001년의 경우 국세경력 5년 미만이 3,668명, 10년 이하가 3,496명 합계 7,164명으로 총원 중 47.73%로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이규섭 2002).

또한 내부업무처리자의 동별·지번별 처리구역은 인사이동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3항)하고 있어 세원관리과에서는 과세사업자들에 대한 정보 및 업황 등의 세적 관리가 어려워 조세포탈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미등록사업자들에 대한 세적관리도 세원관리과에서는 납세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불가능하고 오직 세원

관리과의 통지에 의한 조사과의 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단순업무의 진행에도 적시에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비록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의 경우에 있어서 조사과의 인원만으로 원활한 점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세원관리과 등 다른 과의 직원들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업무형편상 기능간의 협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신고관리상의 문제점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매 신고시 마다 과세관청에서는 특정업종[5]을 중점관리 대상 업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꾀하였다. 과거에는 수동 분석 등을 통하여 외형이 큰 업소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에 대한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당해 업소의 추정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관청에서 작성된 소위 상담과표라는 신고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일정율 이상을 신고하도록 권장하였으나, 2000년 1기 확정신고부터는 개별적인 신고지도를 일체 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실상과 비교·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안내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특정업종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개별 사업자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전산자료상으로만 분석하여 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그 안내문을 받은 성실신고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관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 부가율만을 가지고 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권장하였을 경우 부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또는 수취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매출액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은 방법을 모두 동원할 우려가짙다. 셋째, 매출액증가율을 동일 세무서내의 상위사업자 평균증가율과 당해 사업자간을 비교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것은 모든 사업자는 같은 업종이면 모두 같은 신장율을 견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특수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넷째, 2000년 1기의 경우 신고대상사업자수의 합계가 약 211만 명으로 그 중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대상이 전체의 31.75%에 해당하는 약 67만 명에 달하였다. 이는 과세관

5) 현금수입업종으로서 일반소비자와 직접거래를 하는 음식업, 숙박업, 고액 학원사업자, 전문직업자 및 호황업종등을 말한다.

청의 입장에서 보면 신고내용이 불성실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납세자의 약 32%가 과세관청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신뢰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4) 조세정보의 공개 미흡

세정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공개세정으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상호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는 과감히 현재의 밀폐된 조세행정에서 벗어나 공개세정으로 전환하였을 때 각 사업자간에 조세신고에 대한 상호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이규섭(2002)에 의하면 외식사업자간 부가가치세 부과가 공평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불공평하다고 한 응답자가 49.6%로서 공평하다는 응답자 13.4%에 비하여 불공평하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외식사업자가 과세관청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수 있다. 이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공개세정을 실현함으로써 상호간 불신을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조사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또한 세무공무원들과 외식사업자간 접촉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조세부조리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5)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로 인한 유통질서교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가장큰 걸림돌은 과세유형별 조세불균형,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거절,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흐름의 상이 및 불일치, 자료상의 활약 및 각종 거래상의 부조리로 발생하게 되는 가공거래와 위장거래 일 것이다. 가공거래는 자료상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름 그대로 가공 즉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자료(세금계산서)만 사고 파는 거래이고 위장거래는 실물거래와 자료의 거래가 불일치 한 거래로 실물거래 따로 세금계산서 거래 따로인 거래를 말한다. 이와같은 거래가 발생하므로 재화가 유통되는 경로를 교란시켜 부가가치세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

Ⅳ. 부가가치세의 탈세방지방안

1. 조세제도적 측면의 방지방안

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바로 과거 시행했었던 과세특례제도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라 할 수 있다. 2000년 2기를 기준으로 전체 외식사업자 총 520,199명중 간이과세자가 410,400명으로 무려 78.8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시설규모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사업장 규모가 10평 기준으로 할 때 시설비가 1,500~3,000만원이 되고, 그밖에 주방 시설 등의 구입대금을 감안했을 때 1일 평균 131,506원(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 기준이 년 4,800만원임)에 미달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수입금액이다(이규섭, 2002).

따라서 정확한 기본 시설에 대한 과세관청의 파악은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회피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간이과세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것도 부가가치세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급격한 조세부담은 조세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현행 간이과세제도하의 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후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모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비율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제도의 완전한 토착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5/105에서 2/102(음식업 : 3/103)으로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외식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외식산업이 면세재화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면세재화의 수입조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해서 국내생산이 아닌 국외생산품에 대한 비율만큼 공제율을 낮춘다는 논리이나 면세재화의 공급액이 국내와 국외의 구분이 정확한 통계자료에 입각해서 공제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엄연히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제매입세액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두어 과세관청에서 어떠한 검증절차 없이 임의대로 공제율을 조정할 수 있다

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외식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부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본법의 규정으로 두어 공제율의 결정에 신중을 기함이 옳다고 본다. 또한 재활용 폐자원은 수집하는자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자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전 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실제 산업사회에서 재활용이 원활히 재생되고 거래될 수 있게 하여 실물흐름과 조세증빙 및 제도가 일치하도록 하여 더 이상의 거래상 왜곡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 최종소비자단계에서의 세부담완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 단계에서 조세 저항이 커지면서 조세회피 현상이 발생하고 여기에다 간이과세제도에 의한 차등과세와 대부분의 최종소비자는 과세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치 않으므로 조세포탈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고, 전단계사업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역파급하게 된다. 이에 국세당국은 1999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 거래건당 금액 10만원[6]이상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 수취금액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제81조 제 8항)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당국은 다시 적극적인 유도 방안으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세액공제비율을 인상하고 개인 소비자에게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복권제도를 신설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교적 과세표준 노출이 보편화된 법인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켰고 또한 신용카드 복권제도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2004.1.1.부터 그 공제율을 2%에서 1%(연간 500만원한도)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정도로는 최종소비자의 저항을 줄이기는 역부족이라 생각되며, 새로운 방안으로 납세자의 거래금액에 따른 마일리지제도(현행 납부세액에 따른 마일리지제도와 분리)를 제안한다. 복잡, 다난한 소득공제제도와 복권제도에 대체하여 모든 최종소비자가 거래시마다 주민등록증 또는 납세자카드를 제시하여 거래금액을 국세청 전산실에 신용카드마일리지와 같이 누적시켜 일정금액를 cash back, 세금납부액에서 공제, 상품구매 보상 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세부담을 완화시

---

6) 현재 가산세율은 100/2로 하향조정하였고 거래건당금액도 5만원으로 인상하여 2004.1.1.부터 시행하고 있다.

키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라. 매입세액 불공제제도의 개선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접대비 및 소형승용차 구입과 그 유지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조세정책 당국의 의도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접대비 사용에 따른 비용의 지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접대비도 엄연히 사업행위 중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때 사업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며, 또한 현대사회의 사업행위 형태를 볼 때 승용차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화 되었으며, 차량이 없는 영업행위는 불가능 할 정도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 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증명서로서의 역할과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앞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현행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자료상에 대한 조세범처벌규정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사업자등록의 카드화를 건의한다. 즉 모든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사항이 담긴 카드(현행 신용카드와 같은 것)를 교부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마다 매출자와 매입자가 국세청 전산실에 연결된 카드리더기(판독기)에 거래 내역을 입력한 후 동시에 매출자 카드와 매입자 카드를 읽게 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즉시 국세청 DB에 입력되게 하는 방안이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카드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현재 보편화된 신용카드 거래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유통되는 구매카드제도를 보완 발전 시켰으면 유용할 것이다.

바. 조세처벌규정의 재정비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제재규정을 현실성 있는 처벌 규정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제도를 우리 나라 보다 먼저 실시한 유럽 각국의

경우보다 가산세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무납부 가산세의 경우 일변 4전으로 하여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함으로써 이는 결코 낮은 가산세율 이라고 볼 수가 없다.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5%대이고, 평균 대출금리가 7% 안팍이 현실이라고 볼 때 년 18.5%는 아주 낮은 가산세율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세자료의 발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의 과세누락이 1년째에 부과되었을 경우 무납부 가산세율이 약 18.5%이지만 5년 후에 부과되었을 경우는 무려 본세의 92.5%가 되어 납세자에게 부과의 지연이 그만큼 불리하게 되어 과세관청과 조세마찰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이 있다. 또한 조세법처벌법의 적용규정도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타 국가보다는 과도한 규정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소위 자료상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리게 하고 있는 조세범칙자 들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처분(현실적으로 범칙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다)으로 인해 조세범칙 행위를 재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 조세법 규정의 재정비

조세법의 어려운 규정들을 모든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문귀를 쉽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본법규정 조항에 비하여 현대 상거래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법규정을 제때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조세행정적인 측면의 방지방안

가. 세무조사의 개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시행한다 하여도 납세자에게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조사선정 기준과 대상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세저항 및 과세관청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조세회피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의 시설 및 기본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무서별로 나타날 수 있는 조사대상자 선정의 불균형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

한 과표현실화 등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세원관리의 개선

현행 국세청의 기구를 살펴보면 신고전담 부서와 조사전담 부서 그리고 징수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 등 기능별 조직으로 1999년 하반기부터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 조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자 총 2,855,369명중 선별 경정사업자가 8,790명으로 0.3%에 불과하여 조사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의 신고누락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관청의 각 납세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능직 조직도 너무 경직된 운영이 아닌 융통성 있는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 과세기간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세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무단 폐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다. 신고관리의 개선

외식사업자들의 경우 특히 과세관청에서는 최근까지 현금 수입 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정 신고 과표를 내부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매 신고시 마다 성실신고에 대한 안내문 등을 발송해 왔었다. 그 내용 중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과세표준의 증가를 전제로 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업체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도 많은 부담과 과세관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함이 타당 할 것이다.

라. 조세정보의 공개

과세관청이 밀폐된 조세행정에서 벗어나 공개세정으로 전환하여 각 사업자간에 조세신고에 대한 상호 견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개세정이 정착됨으로써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세무공무원들의 부조리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처벌강화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를 뿌리뽑기 위해서 각종 전산자료로 이와 같은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현재 국세청에서 TIS가동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조기발견) 유통조사를 통하여 위장,가공거래되는 혐의자들을 색출하여 그 대상자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하는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 이와 같은 위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겠고 전술한 사업자등록카드나 납세자카드등을 시행하고 철저히 관리한다면 그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V. 정책적 대안과 기대효과

1. 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대안의 비교분석

지금까지 2, 3, 4장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현황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포탈요인 및 방지방안

	포탈요인	문제점 제기	방 지 방 안
조세제도적 측면	1. 간이과세 제도	① 과세유형간 세부담 불균형 ② 매출과표 증가 기피현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용카드 전표발행 기피 ③ 과세유형전환 기피	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계급간 세액 공제 또는 세액감면으로 세부담 경감. ② 지역별·특정건물별 간이과세자 배제 영역 확대실시.
	2. 의제 매입세액 공제제도	① 공제율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있음으로서 공제율 검증없이 정부의 임의 조정 가능하고 농수산물만이 공제대상 ② 재활용폐자원의 대상사업자와 대상자원이 극히 제한적임.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본법에 규정하여야하고 의제매입 공제대상의 확대 실시와 공제율 확대 해야함 ② 그 사업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고 모든 재활용폐자원을 대상으로 해야함.
	3. 최종소비자단계의세부담 완화	① 법인과 개인과의 신용카드 세액공제혜택 차이를 두고 있음 ② 최종소비자 단계의 조세저항이 큼.	① 법인에게도 신용카드공제 혜택 부여 ② 조세저항 완화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③ 납세자카드 제도화
	4.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그 유지비 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	① 사업과 관련한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함. ② 매입세액 불공제 하려면 동 재화와 관련된 매출세액도 면제시켜야 함.

	포탈요인	문제점 제기	방 지 방 안
조세제도적 측면	5. 세금 계산서 제도	① 세금계산서 수취 회피의 정도가 높음 ② 상대방의 발급거절에 대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적용 ③ 부실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처벌 미약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거절시 거래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함. ② 자료상에 대한 조세범처벌규정별도 규정하여 처벌 강화. ③ 사업자등록카드 사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혁
	6. 가산세 및 처벌 강화	① 조세포탈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 ② 법규정상은 엄격하나 실제 집행은 매우 관대 ③ 유럽제국에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가산세율	① 고의적인 조세포탈이 존속할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됨. ② 가산세 규정을 높임으로써 조세회피에 대한 간접적 예방이 필요함. 단, 고의가 아닌 업무적 착오 등에 의한 경우 법정기일내 수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는 과감한 감면이 필요함.
	7. 난해한 조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복잡화 및 용어·문귀의 해석상 어려움	① 어려운 조세법상 용어 및 문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② 현실에 맞는 법규정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함
조세행정적 측면	1. 세무조사	① 외형위주의 조사 ② 조사 대상 선정상 문제점 ③ 관서별 조사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④ 간이과세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과세자료발생의 취약과 근거과세의 기반 취약이초래	① 사업자들의 시설 및 기본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무서별로 나타날 수 있는 조사대상자 선정의 불균형을 최소화. ②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불완전한 세원관리	① 과도한 세적 담당 건수 ② 공무원의 세무경력이 일천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보관리약화	① 각 사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의 철저화 필요 ② 기능적 조직을 융통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
	3. 신고관리 상 문제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 선정 문제	성실한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성 상실 우려되므로 단순한 전산자료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신중한 집행이 요구됨.
	4. 조세정보의 불공개	현재의 밀폐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자의 불신감 조성	밀폐된 세정에서 공개세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조세부조리 제거가 가능할 것임.
	5. 가공,위장거래와 유통질서교란	실물흐름과 다른 세금계산서 흐름으로 인한 유통경로가 크게 혼란됨	TIS가동으로 조기 발견하고 유통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색출하여 경제활동 무대에서 영원히 추방하며, 납세카드제도 도입으로 사전 방지함.

2. 기대효과

지금까지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에 관한 기존 연구는 납세자의 실제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및 실험에 바탕을 둔 실증연구에 치중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불과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실무경험을 토대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포탈요인과 그 방지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원관리 및 조세당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각 납세자들의 사업과 관련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한 세원관리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신뢰성을 높여 줌으로써 과세당국의 조세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연구와는 달리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회피 성향을 연구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원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오랜 기간동안 실무경험을 축적한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측면에서 연구.검토.제안하였으므로 관련 분야에 실무적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의 조세포탈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방지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비롯한 각종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국세청 발행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포탈실태를 분석하고 그 방지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어서는 본 연구자의 실무경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탈세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조세제도적인 측면과 조세행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조세포탈방지방안을 강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적인 측면의 조세포탈 방지방안으로서 먼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필요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규정을 부가가치세법상 본법에 두어 공제율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비율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현행 매입세액 불공제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접대비와 소형승용차 구입 및 그 유지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포탈에 대한 제재규정을 현실성 있는 처벌규정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법의 어려운 규정들을 모든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강조할 것은 사업자 등록카드와 납세자 카드제도의 도입으로 과세선진화를 앞당겨야 겠다.

둘째, 조세행정적인 측면의 조세포탈 방지방안으로서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평성을 기하여 조세저항과 세무관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며, 또한 과세관청의 각 납세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세무서의 조직을 융통성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식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산서 발행에 대한 엄격한 과세관청의 규제조치, 내부시설에 대한 개업초기의 세원관리, 세무서별 또는 지방국세청 단위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각 사업자의 재산증식에 대한 사후관리의 검증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장.가공거래자를 색출하여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한계점이 있어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부가가치세 포탈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국세청의 자료와 연구자의 실무경험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전반에 대한 분석이 미흡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도 국세청 근무자의 진술과 연구자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지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또는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세청, 1996-2003,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04, *개정세법해설*

김용대, 1992, 조세포탈범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법논점*, p.915

대법원 판례집, 2002.

송만영외, 2003, 부가가치세 해설과 실무, 세학사

유일호, 1998. 12, 우리 나라 탈세규모의 추정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현진권(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한국조세연구원.

이규섭, 2002,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행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범관, 1998, 조세회피의 성실납세 유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태로・안경봉, 1991, *판례체계 조세법*, 조세통람사

이필우, 1997, *조세론*, 법문사

조세법전, 2002.~2004.

함영복, 2001, 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탈세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evention Policy of Value-Added Tax Evasion in Korea

Sung Bae Park*
Won Yong Bae**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value added tax evasion and to suggest several prevention policies about it.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is based on various kinds of preceding researches, documentary records, and especially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also practical experience took a important part of suggesting the prevention policies about the tax evasion of value added tax.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two different views which on the tax system and the tax administration. Th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in tax policies are as follows :

First, the number of business under tax audit shall be increased and the criteria on which the business is chosen is improved. And it is required that raising of deduction ratio of deemed input VAT and capital expenditures for POS. Also, the deduction ratio of credit cards should be applied impartially to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Adopting the system of business registration card and card of tax payers will be helpful for the advanced taxation.

Second, the prevention plans on the side of tax administration, the selection of taxpayers who gets tax audit should be done fairly to dissolve distrusting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he taxation office should organize tax sources of each tax payers. To protect the value added tax evasion of food business, there should be a strict system of issuing an invoice. For camouflage transactions, adopting strict systems such as never giving a chance to have economic activities is needed.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n tax evasion of value added taxes, this research is depended on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practical experiences. So this research might be insufficient to analysis the prevent plans. Therefore, the questionnaires and more experiments will be helpful for further researches.

*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
** CPA, Kyungwon University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재완*
이병화**

<요 약>

최근 기업의 부실감사와 분식회계등의 공인회계사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1)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감사회사의 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은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로 감사인의 근무연수, 학력, 교육훈련변수를 선정하였고, 감사회사의 조직특성변수로 감사회사의 규모와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근무연수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정도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정도가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첫째, 감사회사의 규모와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회사의 규모와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인의 교육훈련변수와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는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법인과 제휴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훈련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높아질 경우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감사품질, 윤리수준, 감사인의 개인적 특성, 감사회사의 조직특성

---

*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pjaewan@freechal.com, 011-9382-2738, 주저자
** 거제대학 세무회계정보과 전임강사, bhlee@mail.koje.ac.kr, 055-680-1543

논문접수일 : 2004년 4월, 게재확정일 : 2004년 5월

Ⅰ. 서 론

회계는 기업내·외의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무보고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도되어야 한다.

회계감사(Accounting Audit)는 회계를 종결짓는 행위로 회계의 산출물인 재무제표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감사의 역할은 1) 회계정보에 대해서 감사를 적용함으로써 유도되는 “회계정보의 가치증진(the enhanced value of accounting information)”의 정의를 입증하는 것이며, 2)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필요성에 대하여 감사에 의한 부가가치를 관련지으며, 3) 감사직능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조하며, 정보이용자들간의 필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회계감사서비스는 공익성을 지닌 준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계감사서비스의 이러한 성격은 감사인의 자질과 윤리수준이 회계감사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기술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감사인의 감사 기술적 능력이 유사한 경우에는 독립성이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가 되는 것이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과 정신적 독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관상 독립성의 유지여부는 정신적 독립성보다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반 법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 독립성은 측정하기 힘든 감사인의 심리적 상태이다. 궁극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을 전제로 한 정신적 독립성 확보 없이는 달성하기 힘들다. 정신적 독립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감사인의 윤리일 것이다. 감사인의 윤리는 제반법규나 직업윤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익추구의 조직중심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할 것인가, 또는 명성추구의 전문가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할 것인가의 선택도 감사인의 윤리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사품질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감사인의 조직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적특성과 조직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변수들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감사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이나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에 있어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사품질과 공인회계사 윤리수준

가. 감사품질의 의의

DeAngelo(1981)의 연구에서, 그는 감사품질을 “증권 시장을 평가하는 특정 감사인이 (a) 피감사회사의 회계시스템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b) 그 위반사항을 보고할 결합확률(joint probability)”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DeAngelo의 정의에서 특정감사인의 발견확률은 감사인 개개인의 능력에 좌우되고, 그 위반사항을 보고할 확률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한 문제가 된다.

감사품질은 감사기술과 독립성으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다. 감사기술은 감사인들이 부정과 오류를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사기술은 다시 개별감사기술과 일반감사기술로 나눌 수 있다. 개별감사기술은 외부적 증거를 획득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증거 수집시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일반감사기술은 내부적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표본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사기술 적용을 위험과 결부시켜 보면 위험이 높을 때 개별감사기술을 채택하고 위험이 낮을때는 일반감사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부감사의 질적인 개선방안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체계적인 개선방안의 형태를 확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일이라 하겠다. 감사업무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즉 회계법인과 관련한 요인, 감사인과 관련한 요인, 외부적 환경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회계법인과 관련한 요인으로서는 감사회사의 규모, 외국회계 법인과의 제휴 여부등이 있으며, 감사인과 관련한 요인으로서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자격 개발, 감사인의 조직 강화등이 있다. 마직막으로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규제제도, 감리제도, 감사계약제도등이 있다.

(1) 회계법인과 관련한 요인

우리나라의 감사조직은 점점 더 외국법인과의 제휴 및 합병을 통하여 거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와 관련한 제반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감사품질의 개선을 위한 감사조직의 대형화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감사회사는 감사인이 행하는 감사의 품질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주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감사조직이 거대하다면 감사인은 감사품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피감사회사와의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DeAngelo의 1981년 8월의 연구와 12월의 연구를 먼저 언급할 수 있다. 그의 첫 번째 연구에서는 초도감사시의 가격할인(Low Balling)의 규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12월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특정 피감사회사의 수입이 감사회사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감사인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요인이 줄어든다. 그리하여 감사에 대해서 정보이용자가 인식하는 감사의 품질은 향상된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감사회사의 규모가 감사품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관과 백원선(1998) 은 우리나라 Big 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Big 6 제휴 회계법인을 제외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차별화 되고 있는지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감사보수가 경쟁적으로 결정되는 감사시장에서는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보다 높은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고, 감사인간에 능력이 동일하다면 감사수행 업무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Big 6 제휴 회계법인과 국내법인간에 감사보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Big 6 제휴 회계법인은 국내회계법인에 비하여 감사투입시간이 뚜렷하게 많았다. 이는 Big 6 제휴 회계법인의 감사능력과 기술이 국내법인에 비하여 낮지 않다면, Big 6 제휴 회계법인들

이 국내 회계법인보다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 감사인과 관련한 요인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개인특성에 대한 연구로서 이원창(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을 a) 감사인의 연령, b) 감사인의 전업경력, c) 교육훈련, d) 조직간의 이동정도의 차이로 들어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감사인의 개인특성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Waller와 Felix(1987)의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전업경력은 판단의 정확성이나 의견일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Abdolmohammadi와 Wright의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업무, 준 구조적인 업무, 비구조적인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감사경험의 수준이 서로 다른 연구대상자들의 판단을 비교하여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비구조적인 업무와 준 구조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경험이 많은 감사인의 집단과 적은 집단 간에 중요한 의사결정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감사품질과 윤리수준과의 관계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제33조, 직업윤리규정 제17조, 회계감사기준 제7조)과 정신적 독립성(회계감사기준 제7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적 독립성(independence in mental attitude)은 감사인이 모든 감사과정에서 꾸밈과 거짓됨이 없는 곧은 마음과 객관성, 즉 정신적으로 정직한 자세를 견지하며 주위의 여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정불편한 견해를 유지하였을 때 확보된다. 외관상 독립성(independence in appearance)이란 정보이용자들이 해석하거나 느끼게 되는 독립성으로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특정 감사인이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외관적인 여건을 고려 할 때 독립성에 의문을 초래할 만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신뢰성은 저하되며, 따라서 외관상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 없다.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정보이용자가 외부적으로 나타난 감사환경 때문에 독립성에 의문을 품게 될 경우에는 감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된다. 물론 외관상의 독립성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독립성이 반드시 유지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외관상의 독립성은 정신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요건이 된다.

외관상 독립성의 유지여부는 정신적 독립성보다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반 법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 독립성은 측정하기 힘든 감사인의 심리적 상태이다. 궁극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관상 독립성을 전제로 한 정신적 독립성 확보

없이는 달성하기 힘들다. 정신적 독립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감사인의 윤리일 것이다. 따라서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 외관상 독립성, 및 감사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표 1〉 감사품질의 구성

감사품질(Audit Quality) = 감사기술 × 독립성 = 감사기술 × 외관상 독립성 × 정신적 독립성

그러나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이 높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신적 독립성이 낮더라도 외관상 독립성이나 감사기술이 높으면 감사품질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윤리는 제반법규나 직업윤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제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익추구의 조직 중심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할 것인가 또는 명성추구의 전문가적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취할 것인가의 선택도 감사인의 윤리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독립성, 나아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윤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Ⅲ. 선행연구

1. Loeb의 연구

공인회계사의 윤리적 행동을 연구하여 전문가로서의 규범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발견하고 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제 내지는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미국의 Milwaukee, Wisconsin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증연구이다. Loeb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공식적인 통제체계, 업무의 특성, 윤리성향 및 윤리문제 접촉기회, 동료 공인회계사와의 관계를 사용하였다.

공인회계사 사이에서의 윤리적인 행동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윤리적인 행동에 대

한 측정치를 개발하여 종속변수 측정에 이용했다.

Loeb의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행동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은 계층화 체계에서 공인회계사의 위치와 개인 공인회계사의 독특한 특성의 2가지 주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층화 체계에서 공인회계사 상위의 고객을 갖는 경우 하위의 고객을 갖는 경우보다 규정을 범하게 하는 압력을 덜 받는다. 상위의 고객을 갖는 회계사무소 형태는 주로 대규모 회사법인인 바 대규모 회계법인은 교육배경이 보다 좋은 공인회계사를 모집하고 또한 2~3명의 고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에 더 잘 대항하는 경향이다. 고객의 지위에 상관없이 갈등상황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윤리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은 더 높다. 계층화되지 않은 사무실 형태에서는 사무실의 동료가 제한적이지만 윤리행동에 영향을 준다. 윤리에 대한 전반적 사무실 분위기가 엄격한 곳에서는 규정을 범하게 하는 외부압력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허용적 분위기에서는 압력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우유부단함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계층화된 사무소에서는 윤리에 대한 사무실의 전반적 분위기가 윤리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대신 윤리행동이 사무실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가 높을수록 규정을 범하는 비율이 낮았다. 지위가 낮은 공인회계사들은 승진하기 위해 고객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며 따라서 고객의 비윤리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 같았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윤리적 행동이 윤리성향, 윤리문제를 접하는 기회, 미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여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외부압력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윤리문제에 접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윤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윤리문제에 접하는 기회가 적은 자는 규정의 변화를 모를 수 있고, 과거에 알고 있던 윤리내용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인 경우, 공식적 징계를 피하고자 윤리규정을 덜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Goldman과 Barlev의 연구

감사인의 독립성이 회계감사에서 중요함을 강조하며 독립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3가지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찾고 있다.

가.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이해상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원하나 그 감사보고서로 인해 잠재적인 투자자가 피감사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든지 채권자가 신용제공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감사회사의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또한 피감사회사의 경영자는 주주 및 제 3자에게 좋은 성과를 보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에는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이 존재한다.

나.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

주주는 경영성과의 평가에 감사인의 보고서를 의존하면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보다 더 유리한 감사보고서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의 상충이 있다.

다. 감사인의 이익과 전문직업수준의 상충

감사인은 전문직업기준을 범함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기준위반을 거절함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 때의 이익이나 손실의 원인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수준과 감사인간의 이해상충인 것이다.

위의 3가지 이해상충은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며 이중 감사인과 피감사와의 세력균형의 측면에서 다룬 것이 특징이다. 세력균형이란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 하여금 전문직업기준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과 그 압력에 대처하는 능력과의 함수을 말한다. 감사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의 이런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이해상충집단의 상대적 세력의 함수라고 본다. 종속변수는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한편 피감사회사의 힘의 원천은 (1)감사인의 책임 및 교체권한 (2)감사보수의 결정 (3)감사업무의 여건 결정에 있으며 감사인의 힘의 원천은 (1)해결되는는 문제의 성격 (2)제공하는 해택의 크기 (3) 직업윤리규정의 통제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피감사회사의 힘의 크기와 감사인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피감사회사의 힘의 크기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세력균형을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그 방법으로는 감사인의 교체제한, 감사위원회 제도도입, 재무보고기준의 엄격화, 법적 의무의 강화, 감사인 자신의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의 경영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는 결론이다.

3. Schulte, Jr의 연구

미국공인회계사의 윤리위원회가 의견서에서 경영자문의 제공여부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음을 착안, 감사보고서 이용자를 상대로 질문서에 의한 의견조사를 했다. 결론은 피감사회사에게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즉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이해관계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래의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피감사회사에 경영자문 제공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며 회계법인 조직의 대형화, 계층화, 직능의 전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4. Nichols와 Price의 연구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의 모형을 인간상호관계 교환이론을 이용한 윤리적 연구이다. Goldman과 Barlev 모델에서 갈등상태에서의 피감사회사의 권한이 감사인의 그것보다 크다고 하고 이같은 권한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감사기능이 일상적이고 그 서비스 수혜자가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이같은 불균형은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사이에 의존하는 의존성의 정도가 상호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피감사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반대합부와 감사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반대합부의 교환을 비교할 때 전자가 보다 높게 평가되고 후자가 보다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피감사회사가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였던 바 경영자문 서비스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 원가부담이 낮을수록 감사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 받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5. Finn, Chonko와 Hunt(1988)의 연구

공인회계사들이 직면하는 윤리문제의 성격 및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윤리문제의 성력 및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윤리문제를 축소시키는데 있어서 사원(Partner)과 윤리 규정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AICPA회원을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95%는 개인 감사인 이나 사원이었는데 이 표본의 분포가 말해주듯이 중소 규모의 회계법인의 문제점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러한 회계법인들은 대형법인보다 비감사업무(주로 세무업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

는 이러한 사원들의 윤리적 인식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러한 공인회계사들이 직면하는 가장 빈번한 윤리문제는 의뢰인들이 주로 세무보고를 수정하자는 것이었고, 또한 최고 경영층이 비윤리행위를 비난할 때 윤리문제는 축소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6. Cohen와 Pant(1989)의 연구

Treadway Commission의 허위재무보고를 축소하는 제 권고안에 착안하여 회계전문직업에 있어 고도의 윤리조항을 촉진시키는 주요그룹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특히 공인회계사, 규정 제도기관 그리고 대학 학부교육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무작위로 선정한 메세츄세츠 공인회계사 회원등에게 배포하여 Likert scale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들로 하여금 고도의 윤리기준을 제도화 할 수 있는 11가지의 가능한 메카니즘의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AICPA가 가장 유용한 메카니즘(평균 5.4, 표준편차 1.3)으로 나타났고 반면 정부규제가 가장 낮은 것(평균 3.0, 표준편차 1.7)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계법인간 상호감리는 두 번째 유요한 것(평균 4.9, 표준편차 1.5)으로 나타났다. 상호 법인간 감리제도가 소형법인에 상대적으로 분리한 비율로 많아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대형법인의 응답자간에 상호감리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인지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Beets와 Killough(1990)의 연구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고발제도의 유효성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건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고발제도에 의존하여 많은 직업단체들이 윤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윤리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고 실무종사자들이 믿게 될 때에는 이 고발제도는 유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처벌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위험, 즉 발견될 위험, 제보될 위험, 처벌될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처벌가능성 = 발견될 위험 × 제보될 위험 × 처벌될 위험'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이 고발제도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고객 실무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한 결과 (1) 사실상 감지되지 않는 윤리 위반 사항이 25%이상 되었으며 (2) 목격된 위반 사례의 경우도 겨우 절반정도만 제보된다는 것이다. (3) 제보된 위반사례가 제제조치를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의 경우 1/3경우만 제제조치를 따를 것으로 판단

하였다. 위의 3가지를 결합하여 판단해 보면 윤리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고발제도는 윤리규정 위반을 억제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8. 최준환(1989)의 연구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 결정요인을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그들의 경험과 인식을 설문지 및 면접방식에 의해 분석하였다.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에 양(+)의 방향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국제화 여부, 조직화 여부, 독자적인 계약 고객수, 실무경험, 감독기관의 통제 등이었으며,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피감사회사의 압력, 조직의 규모, 감사업무 종사시간 비율등으로 나타났다.

9. 이명곤(2000)의 연구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문화와 관련된 감사인의 윤리적 문제점을 파악과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외국회계법인과 제휴형태(Big 6제휴 회계법인, Non-Big 6 제휴 회계법인 및 비제휴 회계법인)에 따른 감사인의 윤리수준차이를 분석하였다.

회계법인문화와 관련한 감사인의 윤리적 문제점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감사인은 고객의 유지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회계법인과 제휴유형별 윤리수준의 차이분석결과 (1)기밀누설과 관련한 사례와 경쟁자를 비방하는 경우를 다룬 사례에서는 Non-Big 6 제휴 회계법인의 윤리수준이 가장 낮았고, (2)고유위험이 높은 감사대상회사를 대상으로 감사계약체결과 관련한 사례에서는 Big 6 제휴 회계법인의 윤리수준이 가장 낮았다. (3)유대관계가 있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감사수임과 관련한 사례와 고객에 대한 과잉호의와 관련한 사례에서는 비제휴 회계법인의 윤리수준이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미치는 요인

연구자	연구 목적	내 용		
Loeb	공인회계사 - 윤리적 행동 차이 평가	· 계층화 체계 : 공인회계사 위치 · 개인공인회계사 특성 : 미국공인회계사회원여부, 윤리성향, 윤리문제접촉 기회		
Goldman · Barlev(1974)	독립성 문제 발생 요인 규명	· 감사인/피감사인 이해상충 · 주주/경영자 이해상충 · 감사인 이익/전문직업 수준 상충		
Schulte(1965)	경영자문 제공 여부에 따른 독립성 차이	· 피감사회사 ⬅ 경영자문 제공 : 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상충관계 발생		
Nichols(1976)	Goldman · Barlev연구 확장	· 감사인/피감사인회사 이해상충 ↔ 인간상호관계 교환이론		
Finn, Chonko · Hunt(1988)	Partner & 윤리문제 유효성 검증	· 의뢰인 세무보고 수정 ➡ 윤리문제 발생 · 최고경영자층 비윤리적 행위비난 ➡ 윤리문제 축소		
Cohen · Pant(1989)	윤리기준제도 메카니즘 유효성 평가	· 유효성 순서 : AICPA>회계법인 상호감리>정부규제		
Beets · Killough(1990)	윤리규정 준수 & 고발제도 유효성 연구	· 고발제도 ➡ 윤리규정 준수 필요충분조건 아님		
최준환(1989)	공인회계사 윤리수준 결정 요인 규명	윤리수준	양(+)	국제화 여부, 조직화 여부, 감독기관
			음(-)	피감사회사 압력, 조직규모, 감사업무 종사시간
이명곤(2000)	회계감사인 문화 & 윤리수준 문제점 파악	· 감사인 : 고객 유지/확보 초점 · Big 6 회계법인제휴 ↔ 감사인의 윤리수준 ➡ 정신적 독립성 영향 (×)		

Ⅳ.가설수립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연구모형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는 감사인의 연령, 감사인의 전업경력, 교육훈련 등의 변수가 있다[이원창(1989), Schroeder(1986), Aston and Brown (1984)]. 또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로 이근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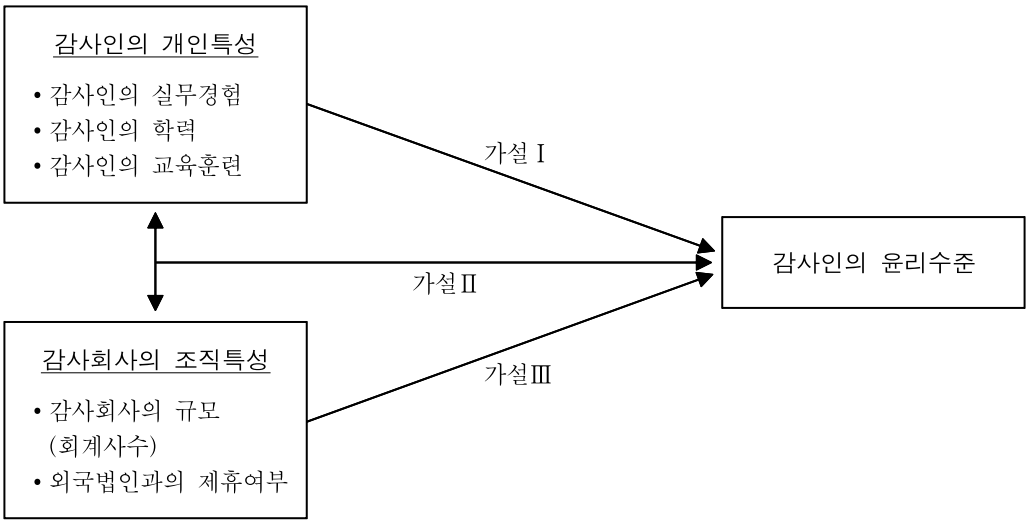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연구에서는 감사인 개인의 학력, 실무경험, 교육훈련 등의 변수를 들고 있으며,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교육 및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oeb는 직업적만족, 감사 실무영역, 연령, 출신학교 등이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DeAngelo(1981)의 연구에서는 감사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피감사회사의 수입이 감사회사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감사인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요인이 줄어들며, 감사품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ig-6 제휴법인의 감사품질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회사의 조직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과의 관계를 직접 규명한 연구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감사인의 개인특성 및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가설의 수립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Loeb의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적인 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인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낮더라도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과 감사기술이 높다면 감사품질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에 따른 감사인의 윤리수준의 차이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 감사인의 실무경험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 감사인의 학력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 감사인의 교육훈련정도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관련한 가설수립과 마찬가지로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 감사회사의 규모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 감사회사의 외국법인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은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1 :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근무연수와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2 :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학력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3 :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교육훈련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1 : 회계법인의 규모는 감사인의 근무연수와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2 : 회계법인의 규모는 감사인의 학력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3 : 회계법인의 규모는 감사인의 교육훈련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감사인의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을 감사인의 근무연수, 학력 및 교육훈련변수를 선정하였다.

감사인의 근무연수는 공인회계사의 면담을 통하여 공인회계사를 합격한 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총 연수로 측정하였는데, “1”은 1년~3년, “2”는 4년~6년, “3”은 7년~9년, “4”는 10년~13년, “ 5”는 14년 이상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감사인의 학력은 CPA의 특성상 국졸과 중졸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졸, 대졸, 대학원졸(석사), 대학원졸(박사)로 측정하였다.

감사인의 교육훈련은 최준환(1989)의 연구에서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연수, 회계잡지 및 논문, 동료 CPA와의 비공식적인 토론에서 최근 5년간의 감사인의 윤리문제가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가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 윤리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 “1”, 보통이면, “4”, 자주 언급되었으면 “7”에 이르는 7-point Likert-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 “1”에 가까울수록 감사인의 교육훈련이 낮고 “7”에 가까울수록 감사인의 교육훈련이 높다.

나. 감사회계사의 조직특성

본 연구에서는 감사회사의 조직특성변수로 공인회계사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의 규모와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로 측정하였다.

감사회사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감사인의 수, 피감사회사의 수, 매출액 등의 변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감사인의 수가 공인회계사가 가장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수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제휴가 되었으면 “예”, 되지 않았다면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다. 윤리수준의 측정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감사인의 정신적독립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경영자 주장 수용, 기밀누설, 유대관계가 있는 비영리기관의 감사수임, 고유위험이 높은 감사대상회사를 대상으로 감사계약체결 시도, 초도감사계약의 할인, 고객에 대한 과잉 호의, 경쟁자 비방, 불충분한 감사의 수행 등과 같은 윤리적 내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 중 사례 1, 사례 2 및 사례 3은 Loeb(1971), Armstrong (1985), Claypool 등(1990) 및 Cohen 등(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를 이용하였고,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및 사례 8은 Cohen(1995)이 사용한 사례로서 이명곤(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사례에서 제시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해 “1” 행동하지 않는다, “7” 행동한다의 Likert-type Scale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 “1”에 가까울수록 윤리수준이 높으며, “7”에 가까울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낮다.

Ⅴ.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1. 가설검증

가.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윤리수준간(가설 1)의 검증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중 근무년수를 제외한 학력과 교육훈련이 윤리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의 개인적특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변수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기각된다.

〈표 3〉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

독립 / 종속	근무년수	학 력	교육훈련
윤리수준	-.071 P=.564	-.318 P=.008***	-.265 P=.028**

(*P < .10, **P < .05, ***P < 0.01)

감사인의 학력은 영향도가 -0.645로서 95%신뢰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1-2는 채택된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학력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감사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진다[1].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은 영향력이 -0.217로 90%신뢰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3은 채택되며, 감사인이 연수, 회계잡지 및 논문, 동료 CPA와의 비공식적인 토론에서 윤리문제를 자주 언급한 경우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이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외의 변수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Regression Analysis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감사인의 윤리수준			
		B	Beta	T	Sig T
감사인의 개인특성	근무년수	6.700E-02	0.092	0.738	0.463
	학력	-0.645	-0.299	-2.481	0.016**
	교육훈련	-0.217	-0.235	-1.936	0.057
	상수	5.202		7.218	0.000***
R^2		0.151			
F		0.112			
Signif F		0.013**			

(*P≤0.1, **P≤0.05, ***P≤0.01)

1) 본 연구에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값이 높을수록 낮으며, 값이 낮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높다. 그러므로 음(-)의 부호는 학력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측정하는 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높다.

나. 감사회사의 특성과 윤리수준간(가설 2)의 검증

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휴여부와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상관관계는 -0.215로 90%신뢰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사수와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에도 0.220으로 90%신뢰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감사회사의 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

독립변수 / 종속변수	회계사 수	제휴여부
윤리수준	.220 P=.069	-.215 P=.078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은 6.0%이며, Signif F값도 0.133으로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 및 회계법인의 규모변수로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향도 분석결과에서도 회계사수는 영향도가 8.871E-02로 나타났고, 제휴여부는 -0.407로 모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 2-1과 가설 2-2는 기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법인의 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감사회사의 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Regression Analysis

독립변수 / 종속변수		감사인의 윤리수준			
		B	Beta	T	Sig T
감사회사의 특성	회계사 수 (규모)	8.871E-02	0.136	0.982	0.330
	제휴여부	-0.407	-0.147	-1.064	0.291
	상수	3.090		4.760	0.000***
R^2		0.060			
F		2.079			
Signif F		0.133			

(*P≤0.1, **P≤0.05, ***P≤0.01)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품질이 높다고 해서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이 감사윤리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설 1의 검증에서 나타난 결과인 감사인의 교육기회와 윤리문제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높일 수 있다.

다. 회계법인의 조직특성과 감사인의 개인특성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기존의 연구에서는 selection approach, interaction approach, system approach를 적합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Van de ven & Drazin, 1985). 그러므로 본 연구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는 적합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계법인의 조직특성과 감사인의 개인특성의 적합도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2가지 검증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감사인의 개인특성, 회계법인의 특성 및 이들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식을 설정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EL_i = \alpha + \beta IC + \sum_{i=1}^{3} \gamma_i CC_i + \sum_{i=1}^{2} \delta_i IC \cdot CC_i + \varepsilon$$

여기서, ELi : 윤리수준

IC : 개인적특성

CCi : 회계법인의 특성

IC · CCi :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회계법인의 특성간의 상호작용항

α : 상수

β, γ, δ : 회귀계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인의 교육훈련변수와 회계법인의 제휴여부간의 상호작용이 90%신뢰수준에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3-1-3만 채택되며, 나머지 가설은 기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인 형태가 단조증가(monotonic)인지 비단조증가(nonmonotonic)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인의 윤리수준(EL)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분하였다(Schoonhoven, 1981).

$$\frac{\Delta EL_i}{\Delta CC_i} = \gamma_i + \delta_i IC$$

위 수식에서 (⊿ELi/⊿CCi)의 값이 0일 경우 교육훈련(IC)은 -(γi/δi)이 되며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2.264 - 0.560 · 교육훈련 = 0
교육훈련 = 4.042857

위에서 구한 값이 교육훈련(IC)에 대한 측정범위내에 포함되면 비단조증가형태를 측정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단조증가의 형태를 지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정도를 측정하는 범위(1~7)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형태가 비단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회사의 특성간의 적합도검증

종속 / 독립	윤리수준		종속 / 독립	윤리수준		종속 / 독립	윤리수준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상수	5.079	0.001***	상수	3.358	.084*	상수	1.362	.461
근무연수	-.387	.276	학력	-3.785E-02	.962	교육훈련	.428	.235
제휴여부	-1.977	.129	제휴여부	.662	.648	제휴여부	2.264	.135
근무연수 * 제휴여부	.348	.266	학력 * 제휴여부	-.423	.455	교육훈련 * 제휴여부	-.560	.058*
R^2	.065		R^2	.125		R^2	.153	
F	1.474		F	3.040		F	3.857	
Sig	.230		Sig	.035**		Sig	.013**	
종속 / 독립	윤리수준		종속 / 독립	윤리수준		종속 / 독립	윤리수준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B	유의확률
상수	2.273	.010***	상수	5.095	.000***	상수	4.634	.000***
근무연수	4.168E-02	.843	학력	-1.055	.025**	교육훈련	-.419	.066*
회계사수	.168	.406	회계사수	-.368	.347	회계사수	-.210	.483
근무연수 * 회계사수	-4.345E-03	.938	학력 * 회계사수	.197	.233	교육훈련 * 회계사수	6.550E-02	.277
R^2	.050**		R^2	.138		R^2	.111	
F	1.130		F	3.462		F	2.710	
Sig	.344		Sig	.021**		Sig	.052*	

(*P≤0.1, **P≤0.05, ***P≤0.01)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훈련이 일정한 정도(4.042)를 넘을 경우 회계법인이 외국법인과 제휴되지 않았을 경우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는 기법인 Fisher's z검증기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sher's z검증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의 제휴여부와 회계사수가 많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휴에 따른 각 집단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회계법인의 제휴여부에 따른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 간의 Pearson Correlation

변수 / 제휴여부	근무년수	학력	교육훈련
제휴(有)	-0.058 P=0.679	-0.205 P=0.142	-0.150 P=0.283
제휴(無)	0.252 P=0.365	-0.441 P=0.100*	-0.600 P=0.018**

(*P≤0.1, **P≤0.05, ***P≤0.01)

본 연구에서는 외국법인과 제휴가 안된 법인의 경우 학력과 교육훈련이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상관관계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의 표본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Fisher's z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간의 상관관계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1) Transformation of Fisher's $z = 1.151 \log_{10} \frac{(1 + r)}{(1 - r)}$

2) Standard Z Score

$$Z = \frac{(Z_1 - Z_2)}{\sqrt{\frac{1}{(N_1 - 3)} + \frac{1}{(N_2 - 3)}}}$$

2)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는 "1"은 제휴, "2"는 제휴가 안된 것으로 측정하였고, 감사인의 윤리수준은 값이 낮을 경우 윤리수준이 높고, 높을 경우 윤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표 9>의 Fisher's z검증 결과, 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에 따른 감사인의 교육훈련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상관관계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설 3-1-1, 가설 3-1-2는 기각되며, 가설 3-1-3은 채택된다. 이는 회귀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Fisher's z검증결과도 외국법인과 제휴되지 않은 회계법인의 경우 교육훈련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회계법인의 제휴여부에 따른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의 유의성검증

변수명	Transformation of Fisher's z		Standard Z Score
	제휴(有)	제휴(無)	
근무년수	-0.66229	0.257482	-2.86128
학력	-0.25535	-0.47335	0.67816
교육훈련	-0.15111	-0.69297	1.685679**

* α = 0.1(1.28), ** α = 0.05(1.65), *** α = 0.01(2.33)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회계사수에 따라서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상관관계가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회계사수가 낮은 집단과 회계사수가 높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표 10〉 회계사수에 따른 분류

항 목	빈 도
회계사수(100명이하)	34
회계사수(100명이상)	35

또한, 회계사수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의 상관관계는 <표 11>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사수가 적은 집단에서 학력 및 교육훈련과 윤리수준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간 상관관계의 차이가 신뢰할 수 있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Fisher's z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회계사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표 11〉 회계법인의 회계사수에 따른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

변수 / 제휴여부	근무년수	학력	교육훈련
회계사수 (100명이하)	-0.014 P=0.940	-0.450 P=0.008***	-0.359 P=0.037**
회계사수 (100명이상)	0.042 P=0.813	-0.081 P=0.644	-0.107 P=0.540

(*P≤0.1, **P≤0.05, ***P≤0.01)

〈표 12〉 회계법인의회계사수에 따른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Pearson Correlation의 유의성검증

변수명	Transformation of Fisher's z		Standard Z Score
	회계사수 (100이하)	회계사수 (100이상)	
근무년수	-0.01473	0.44757	-1.83165
학력	-0.48458	-0.08116	-1.60082
교육훈련	-0.37564	-0.10738	-1.06449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 감사인의 개인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감사회사의 특성은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감사회사의 조직특성은 감사인의 개인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개인특성변수로 감사인의 근무연수, 학력, 교육훈련변수를 선정하였고, 감사회사의 조직특성변수로 감사회사의 규모와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근무연수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정도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의 학력과 교육훈련정도가 높을수록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첫째, 감사회사의 규모와 감사인의 윤리수준간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회사의 규모와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는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인의 교육훈련변수와 외국법인과의 제휴여부는 상호작용하여 감사인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법인과 제휴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훈련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높아질 경우 감사인의 윤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정신적독립성이 감사인의 윤리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이나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에 있어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uditor'S Ethics Level

Jae Wan Park*
Byung Hwa Lee**

<Abstract>

Mass media have recently reported the social issue of an auditor's immorality, including the false auditing and window-dressing. the auditor's ethics level is so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quality of auditing that it is required to take proper action to enhance their morality.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a few of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quality of auditing,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e elements having an effect on the auditor's ethics level which is importan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auditing.

In addition, the studi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audi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thics level, while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both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audit firms and auditor's ethics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es that the auditor's ethics level will be influenced by both the audi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audit firm, and that it will be also done by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ccounting to the conceptual model of this study, three groups of hypotheses were develop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the auditor's job experience does not have any effect on the level of auditor's ethics, while the auditor's education an training background of ethical problem have an effect on the auditor's ethical level.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both the organizational size of audit firm and its joint with a foreign audit firm do not have any impact on the auditor's ethics level.

Third, it has been also shown that both the auditor's education and training of ethical problem and the joint with a foreign audit firm are correlated to each other and have an effect on the auditor's level of ethics.

It seems that the abov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not only take appropriation action to enhance the auditor's ethics level, but also revise the ethics and accounting & auditing standards for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ey word : auditor's ethics level, the quality of auditing, the auditor's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audit firm

---

* Ph. D stu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Koje College.

참고문헌

강일수, “현대회계감사”. 박영사, 1985,p. 11-12.

고홍화, 김현수, 백영승, 사회 · 행동과학연구방법의 기초(성원사, 1989), pp. 563-566.

강봉규, 통계학-연구자료처리의 통계적방법, 형설출판사, 1994, pp.398～399.

남상오, “회계이론”. 일신사, 1982, p. 74.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론”. 법문사, 1982, p. 78.

이광남, “회계감사의 감리제도가 감사업무의 질적개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임희섭, “전문직의 윤리의식”, 산업사회의 직업윤리, 아산회사복지사업재단, 1981, p. 185.

이만우,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 회계 제24호, 한국공인회계사회, 1988, p. 28.

이근수, “현대회계감사”, 법문사, 1992, p. 110.

이원창, “감사인의 특성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명곤, “회계감사인의 문화와 윤리수준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한국산업경영학회, 2000, pp. 1-30.

조익량, 신회계감사론, 박영사, 1987, pp. 496-497.

정문종 · 이재맹, “회계감사 품질대용치와 산업별 전문감사인 : 우리 회계 감사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회계저널(제5권 제2호), 1996, pp. 239-274.

정문종, “대리인비용, 사적정보의 문제 및 기타 기업특성과 기업의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제22권 제4호), 1997, pp. 91-121.

A.A. Arens and James K. Loebbecke, Auditing : An Integrated Approach, 3rd.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4.

Arich Goldman and Benzion Barlev, “The Auditor-firm Conflict of Interests : Its Implication for Independence”, The Accounting Review(Oct.1974).

A.A.Schulte, “Compatibility of Management Consulting and Auditing”, The Accounting Review(July 1965).

DeAngelo, L. E. “Audit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1년 12월.

D.R. Nichils and K.H.Price, “The Audit-Firm Conflict : An Analysis Using Concepts of Exchange Theory,” The Accounting Review(Apr.1976).

D. Nachmias and C. Nachmias, Research Method in the Social Science(St. Martin's Press, 1981).

DeAngelo, L. E, “Auditor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1년 8월.

Francis, J. R.,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s.” Working Paper, 1983.

J.R Francis, D.J Stokes, “Audit Pric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cs : Furture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86.

Palmrose, Z.,1989, The relation of audit conract type to audit fee and hours, The Accounting Rwview 64(July).

R. A. Shockley, “Perception of Auditors' Independence :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1981).

Schroeder, M. S., I. Solomon., D. Vickrey. “Audit Quality : The Perceptions of Audit-Committee Chairpersons and Audit Partner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March 1986).

S. Dongles Beets & Larry W. Killough, “The Effectiveness of a Complaint-Based Ethics Enforcement System ; Evidence from the Accounting Profess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1990).

Zeo-vonna Palmrose “An Analysis of Audit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Accounting Review(January 1988).